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737

발의연월일: 2023. 2. 1.

발 의 자: 김주영·강민정·김민철

김정호·소병훈·신정훈

양기대 · 윤재갑 · 윤후덕

이개호 · 아수진비 · 정성호

한병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행위 및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 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,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(이 하 "신고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명의대여 등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·처리가 불가하여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"이 법 및 「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 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"로 확대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 게 육성하려는 것임(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2제1항 중 "제33조제1항제8호·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(이하 "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"라 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를 방지하기"를 "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누구든지 이 법 및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47조의2(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 제47조의2(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 위 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위 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-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 -----부동산 시장 제8호·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(이하 "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"라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 서교란행위 신고센터(이하 이 조에서 "신고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신 설> ② 누구든지 이 법 및 「부동 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 시장 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 우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신 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. 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 ② ~ ④ (생 략) 항까지와 같음)